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종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11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16.

발 의 자 : 윤종오 · 최혁진 · 손 솔
전종덕 · 정혜경 · 임미애
김준형 · 한창민 · 김재원
황운하 · 용혜인 · 이해식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교통수단을 법률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, 특별교통수단 등 일부 교통수단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.

이로 인해 해운, 항공 등 기타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며, 교통수단 간 형평성 또한 확보되지 않는 실정임.

이에 해운, 항공 등 기타 교통수단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, 아울러 이미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도시철도 및 철도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과

여객시설을 자유롭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도시철도 및 철도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구체화(안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).

- 도시철도 이용 시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 및 환승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고, 휠체어 이용자의 우선 이용을 보장하는 등 세부 기준을 명시함.

나. 항공, 해운 및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근거 마련(안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신설).

- 항공, 해운 및 수요응답형 차량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, 좌석식별 점자 표지, 화면서비스, 기립 장치 등의 보조기기 설치 기준을 명시함.
-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(이하 “도시철도운영자”라 한다)는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역사 안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와 환승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④ 도시철도운영자는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승·하차 시 차량과 승강장 사이 단차 및 간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도시철도종사자를 승강장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규격 및 기준과 제4항에 따른 도시철도종사자 배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법률 제20756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 제1항 중 “철도사업자 중”을 “철도사업자(이하 “철도사업자라 한다)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철도사업자는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철도차량(이하 “여객운송

철도차량”이라 한다) 전체 좌석의 2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휠체어 이용자 전용좌석으로 배정하여야 한다.

④ 철도사업자는 여객운송 철도차량에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통로 및 편의시설 등을 구비하고 시·청각장애인을 위한 좌석 식별 점자표지, 화면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⑤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(이하 “철도공단”이라 한다) 및 철도사업자는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역사 안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와 환승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⑥ 제4항에 따른 통로, 편의시설, 점자표지, 화면서비스 및 제5항에 따른 승강기, 경사로의 규격과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사업자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철도공단 및 철도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법률 제20756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3 부터 제1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3(항공의 이용 보장) ① 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(이하 “항공운송사업자”라 한다)는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비행기에 휠체어 이용자의 기내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구비하고, 시·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좌석 식별 점자표지, 화면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항공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의 특성에 따른 좌석 및 수하물 처리 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③ 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제2조제3호바목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립장치 등의 보조기기와 탑승교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등의 규격과 기준, 좌석과 수하물비용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의4(해운의 이용보장) ① 「해운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(이하 “해상여객운송사업자”라 한다)는 여객선 내에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을 위한 통로 및 편의시설을 구비하고, 시·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좌석 식별 점자표지, 화면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의 특성에 따른 좌석 및 수하물 처리 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③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무역항 및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휠체어 이용자의 여객선 접근 보장을 위한 기립 장치 등의 보조기기와 경사로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

이동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통로, 편의시설 등의 규격과 기준, 좌석과 수하물 처리 비용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의5(수요응답형차량의 이용보장) ①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(이하 “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”라 한다)는 여객운송을 위한 차량을 도입할 경우, 휠체어 탑승설비 및 점자표시 등 이동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차량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,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법률 제20756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도시철도의 이용 보장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5조(도시철도의 이용 보장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8호 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(이하 “도시철도운영자”라 한다)는 휠 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가 역사 안에서 안전하고 편리 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 와 환승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④ 도시철도운영자는 교통약자 의 도시철도 승·하차 시 차량 과 승강장 사이 단차 및 간격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등 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발판 을 설치할 수 있는 「도시철도 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도시 철도종사자를 승강장 내에 배 치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⑤ 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의 규격 및 기준과 제4항에 따 른 도시철도종사자 배치 기준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법률 제20756호 교통약자의
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
제15조의2(철도의 이용 보장) ①

「철도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
따른 철도사업자 중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는 교
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
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
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
마련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법률 제20756호 교통약자의
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
제15조의2(철도의 이용 보장) ①

-----철도사업자(이하 “철도사
업자라 한다) 중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철도사업자는 제2조제2호다
목에 따른 철도차량(이하 “여
객운송 철도차량”이라 한다)
전체 좌석의 20분의 1 이상에
해당하는 부분을 휠체어 이용
자 전용좌석으로 배정하여야
한다.

④ 철도사업자는 여객운송 철
도차량에 휠체어 이용자를 위
한 통로 및 편의시설 등을 구
비하고 시·청각장애인을 위한
좌석 식별 점자표지, 화면서비
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⑤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
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

<신 설>

<신 설>

법률 제20756호 교통약자의
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
<신 설>

철도공단(이하 “철도공단”이라
한다) 및 철도사업자는 휠체어
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역
사 안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
이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와 환
승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
야 한다.

⑥ 제4항에 따른 통로, 편의시
설, 점자표지, 화면서비스 및
제5항에 따른 승강기, 경사로의
규격과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
령으로 정한다.

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철
도사업자가 제4항과 제5항에
따라 이동편의시설 등을 설치
할 경우 철도공단 및 철도사업
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
수 있다.

법률 제20756호 교통약자의
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
제15조의3(항공의 이용 보장) ①
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
따른 항공운송사업자(이하 “항
공운송사업자”라 한다)는 제2
조제2호마목에 따른 비행기에
휠체어 이용자의 기내 이동을

법률 제20756호 교통약자의
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

위한 편의시설 등을 구비하고,
시·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좌석
식별 점자표지, 화면서비스 등
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항공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
의 특성에 따른 좌석 및 수하
물 처리 비용을 달리 정할 수
있다.

③ 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34
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제2조
제3호바목에 따른 공항 및 공
항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
이용할 수 있도록 기립장치 등
의 보조기기와 탑승교를 우선
제공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
공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
이동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경
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
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
른 이동편의시설 등의 규격과
기준, 좌석과 수하물비용 등은
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법률 제20756호 교통약자의
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

<신 설>

제15조의4(해운의 이용보장) ①

「해운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
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
자(이하 “해상여객운송사업자”
라 한다)는 여객선 내에 휠체
어 이용자의 이동을 위한 통로
및 편의시설을 구비하고, 시·
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좌석 식
별 점자표지, 화면서비스 등을
제공하여야 한다.

②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교통
약자의 특성에 따른 좌석 및
수하물 처리 비용을 달리 정할
수 있다.

③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무
역항 및 항만시설을 관리하는
자는 해당 시설에 휠체어 이용
자의 여객선 접근 보장을 위한
기립 장치 등의 보조기기와 경
사로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
상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에
따라 이동편의시설 등을 설치
할 경우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
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
있다.

법률 제20756호 교통약자의
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
<신 설>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
른 통로, 편의시설 등의 규격과
기준, 좌석과 수하물 처리 비용
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법률 제20756호 교통약자의
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
제15조의5(수요응답형차량의 이
용보장) ① 「여객자동차운수
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3호에
해당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
차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(이
하 “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
송사업자”라 한다)는 여객 운
송을 위한 차량을 도입할 경우,
휠체어 탑승설비 및 점자표시
등 이동편의시설을 갖추어야
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
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
자가 제1항의 차량에 이동편의
시설을 설치할 경우, 수요응답
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
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